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가단524156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4. D

피고 3, 4의 법정대리인(친권자모) A

변론 종결2018. 10. 19.

판결 선고2018. 11. 30.

주 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71,426,280원과 그 중 36,930,158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33,304,445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각 2018. 4. 2.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은 각 47,617,520원과 그 중 24,620,105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2,202,963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각 2018. 4. 2.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망 E와 피고 B 사이에 2015. 7.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49,803,467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49,803,4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1) 제1보증

보증일 : 2013. 4. 19., 보증원금 : 90,000,000원 (76,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 2014. 4. 18. (2016. 4. 15.로 변경)

대출과목 : 기업통장회전대출

대출은행 : 외환은행(이후 하나은행과 합병) 양재중앙지점

2) 제2보증

보증일 : 2014. 3. 25., 보증원금 : 85,000,000원

보증기한 : 2015. 3. 24. (2016. 3. 23.로 변경)

대출과목 :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은행 : 하나은행 반포지점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위하여 위 각 신용보증을 하면서, 소외 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일로부터 값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채채무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다. E는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각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1. 21.과 2016. 1. 28. 각 이자연체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하나은행에게 2016. 5. 19. 86,170,369원, 2016. 5. 31. 77,710,373원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지출한 대지급금 잔액은 2,308,660원이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합계 471,920원(=제1보증에 따른 198,060원 + 제2보증에 따른 273,860원)이다.

바. E는 2015. 7. 3. 부친인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1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E는 2017. 6. 24.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인 피고 A가 3/7, 자녀들인 피고 C, D이 각 2/7의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6397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위 신청이 2017. 11. 21.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C, D의 구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C, D은 E의 상속인들로서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아래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원고에게, 피고 A는 구상금

71,426,280원(166,661,322원 × 3/7) 및 이 중 36,930,158원(86,170,369원 × 3/7)에 대하여는 2016. 5. 19.부터, 33,304,445(77,710,373원 × 3/7)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이 사건 2018.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8. 4. 2. 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은 구상금 각 47,617,520원(166,661,322원 × 2/7) 및 이 중 24,620,105원(86,170,369원 × 2/7)에 대하여는 2016. 5. 19.부터, 22,202,963(77,710,373원 × 2/7)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위 2018. 4. 2. 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청구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7. 3.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친인 피고 B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 이후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49,803,4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6. 1.경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성립되지 않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E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소외 회사의 직원 급여, 거래처 미수금 등을 변제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 B이 E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도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제6조 제1항 제1호), 소외 회사는 2015. 12. 21.부터의 하나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4. 9. 22. G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5. 9. 21.까지 이자 500만 원을 합한 5,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2015. 9. 21.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G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 E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전인 2015. 3. 26. 국민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2005. 6. 3.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2005. 6. 4. H로부터 4,957,091원, 같은 날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9,935,306원,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8,748,706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8,183,393원, 2015. 6. 26.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6,390,622원, 조은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800,975원 등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및 E 사이에 사전구상권 또는 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앞서 본 소외 회사 및 E의 자금차용 현황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6개월 남짓이 경과한 후인 2016. 1. 21.과 2016. 1. 28. 각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E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채무를 부담하다가 2016. 5. 경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E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E의 무자력 여부 갑 3, 10,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7.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의 재산상태는 적극재산은 시가 1억 8,000만 원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은 적어도 아래와 같이 합계 236,212,629원(E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대한 소외 회사의 채무 79,600,000원을 연대보증한 것은 발생시기가 명확치 아니하여 제외하였다)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 채무내역

한국주택금융공사: 68,196,533원(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채무)

국민은행 : 2015. 3. 26.자 신용대출금 7,000,000원

OK저축은행 : 2015. 6. 3.자 대출금 10,000,000원

H: 2015. 6. 4.자 신용대출금 4,957,094원

콜렉트대부 : 2015. 6. 4.자 신용대출 9,935,306원

태강대부 : 2015. 6. 4.자 8,748,706원

산와대부 : 2015. 6. 4. 18,183,393원

아주저축은행 : 2015. 6. 26. 6,390,622원

조은저축은행 : 2015. 6. 29. 2,800,975원

하나은행 : 2014. 3. 27. 1억 원(소외 회사 채무 연대보증)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E가 채무초과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인 피고 B에게 매각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 I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응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매매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E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도 없다는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14호증, 을 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부동산(4층)과 같은 건물에 있고 면적도 동일한 부동산(2층)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187,00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최고액 82,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E는 2015. 8. 12.까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자 등 69,016,757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③ 피고 B은 2015. 6. 3. 4,000만 원, 2015. 7. 31. 6,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E는 위 돈을 같은 날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④ 소외 회사는 2015. 6. 8. 소외 회사의 퇴직 직원 J에게 지급하지 못한 3개월간 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10. 소외 회사 직원들의 급여로 합계 18,324,01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7. 10. E를 제외한 직원 6명의 급여로 14,184,840원, 2015. 7. 31. 직원 K, L에게 급여 5,853,542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8. 10. 직원 급여 합계 22,788,706원을 지급하였다.

⑤ 소외 회사는 그 외 2015. 6.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직원들의 4 대보험료, 세금 등 합계 15,156,518원을 납부하였고, 2015. 8. 7.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도 건강보험료 등으로 합계 5,288,990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같은 면적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근접한 시기에 이 사건 매매대금과 비슷한 가격인 187,0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①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5. 6. 3. E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한 점, ② 피고 B이 2015. 8. 12.까지 지급한 돈은 169,016,757원(=2015. 6. 3. 4,000만 원 + 2015. 7. 31. 6,000만 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9,016,757원)에 불과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E가 소외 회사에 송금한 돈으로 소외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나 4대 보험료와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E의 채무변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E와 피고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의 약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과 E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상회복의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최고액 82,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8. 12. 말소되었고, 그 무렵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68,196,53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8. 9. 20.의 시가가 218,000,000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I은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49,803,467원(=218,000,000원 - 68,196,5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김진철

별지